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0. 27.

사회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10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0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56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회의(2010년 10월 25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건설국장 박주현)

가. 제안이유

-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 제2항)
-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호)
- 굴착 평면도상의 수치를 기호화 함.(안 별표 1 제3호 가목)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2010.7.15 (시행일 2010.10.15) 개정되어 전 자치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조례 개정할 것을 전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어 이를 반영하고,
-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 호
----------	--------

제출연월일 : 2010.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나. 복구비용의 간접란 다음에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에 ‘엔지
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호)
- 다. 굴착 평면도상의 수치를 기호화 함(안 별표 1 제3호가목)
- 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로법 및 서울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10.08.26~10.9.15.20일간)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케부분 또는 간접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케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케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케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케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해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 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법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산금·체납 처분의 준용법률인 제4조 「지방세기본법」의 시행일까지는 제정 전 준용법률인 「지방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 별 표 1 〉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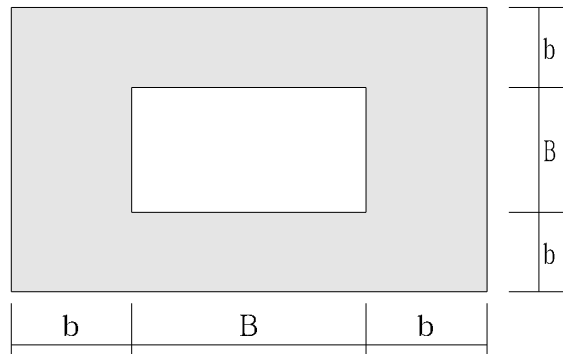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케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 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포장도로 -손케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화강석류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덧씌우기(4cm) 비용
	감독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독업무 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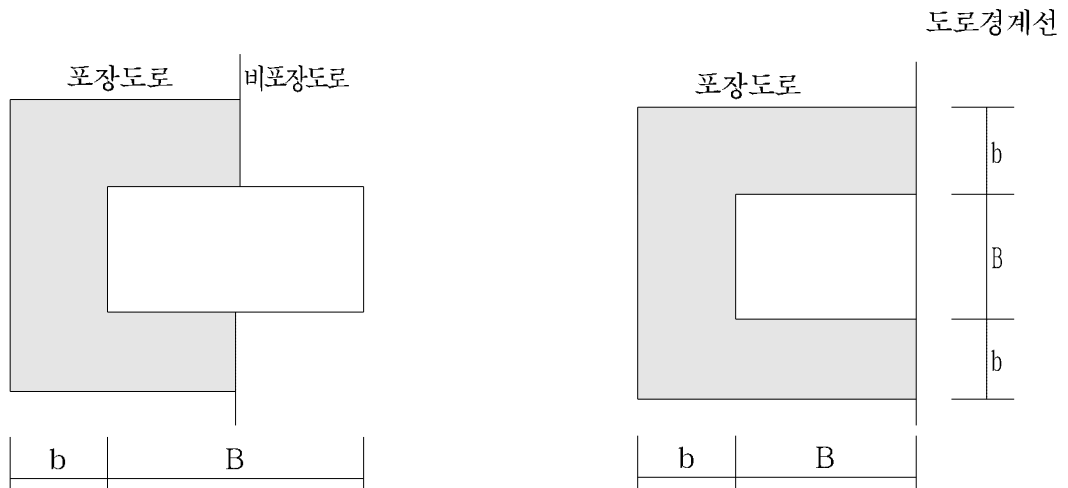
3. 굴착폭(B), 간접손케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케영향(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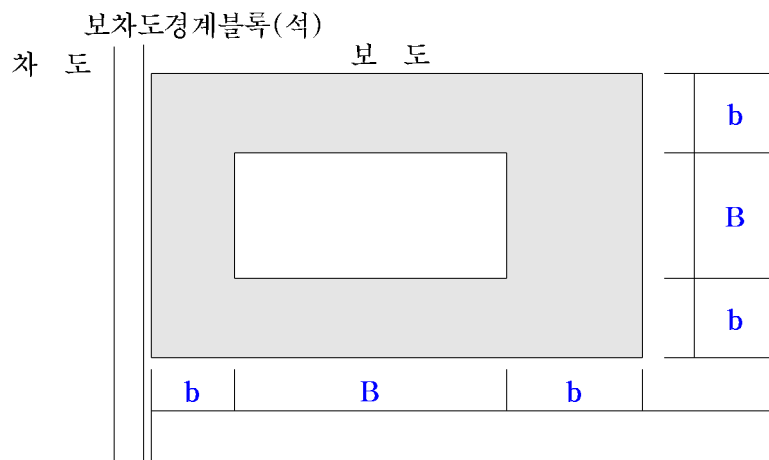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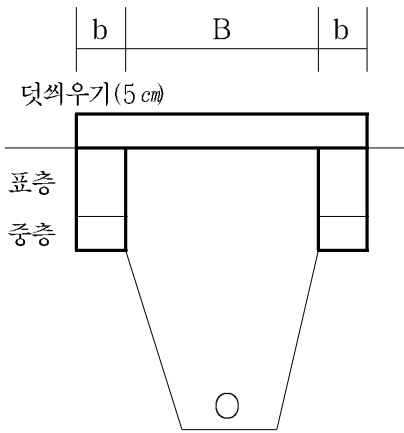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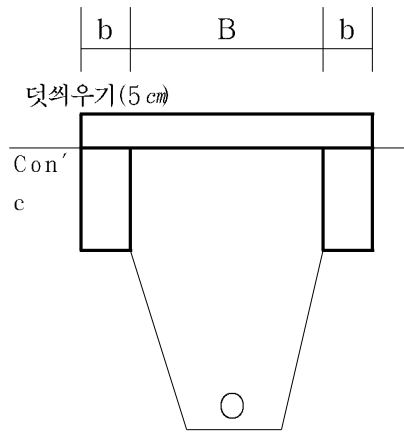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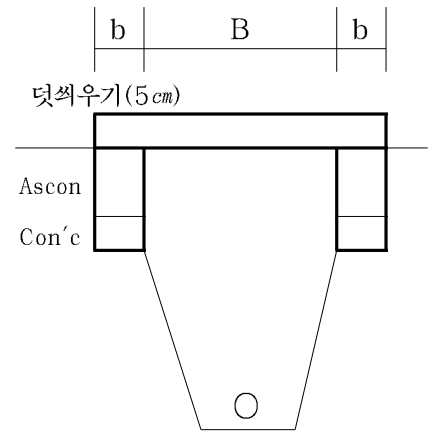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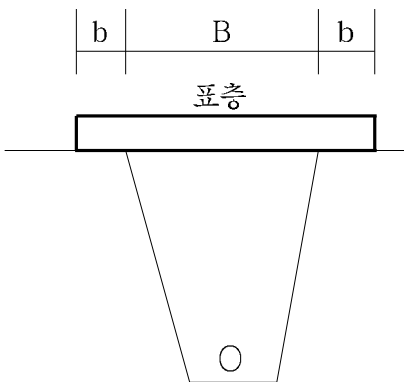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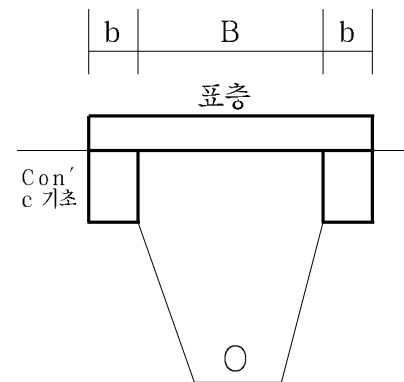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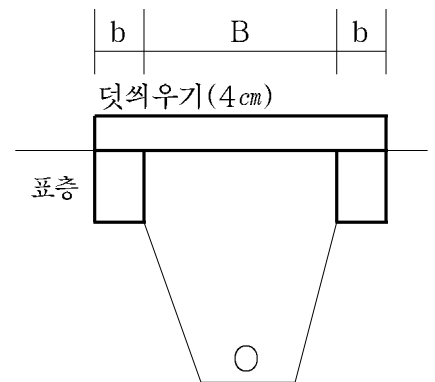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케 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케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케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케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 부분
-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케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 별 표 2 〉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1	표 층 : 5cm 중 층 : 15cm 기 층 : 20cm 보 조 기 층 : 40cm	폭 20미터이상 도로	
	A - 2	표 층 : 5cm 중 층 : 7.5cm 기 층 : 20cm 보 조 기 층 : 30cm	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1	표 층 : 20cm 보 조 기 층 : 20cm	폭 6m이상 도로	
	C - 2	표 층 : 15cm 보 조 기 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CA - 1	표 층 (아 스 콘) : 5cm 표 층 (콘크리트) : 20cm 보 조 기 층 : 20cm	폭 6m이상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CA - 2	표 층 (아 스 콘) : 5cm 표 층 (콘크리트) : 15cm 보 조 기 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블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 6cm 모 래 : 4cm 보 조 기 층 : 10cm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 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 6cm 모 래 : 4cm 보 조 기 층 : 10cm		
	화 강 석	표 층 : 3~5cm 몰 탈 (1:3) : 4cm 콘 크 리 트 기 초 : 10cm 보 조 기 층 : 10cm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기 층 : 10cm 모 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		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괴발생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 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 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케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케부분 및 간접손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케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케부분”이라 함은 직접손케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케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란 ----- ----- 또는 -----. 2. -----이란 -----. 3. -----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 나중에 -----.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p> <p>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p> <p>① 다른 ----- 다른 ----- 도로굴착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해부분 및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 34조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p>	<p>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해부분 및 간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p> <p>2.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p>	<p>④ ----- ----- 어느 하나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또는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u>천재·지변</u>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p> <p>⑤ 제4항 <u>단서의 규정에 의하여</u>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u>당해</u>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u>다음달</u>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의 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p> <p>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u>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 90조에 의하여</u> 가산금을 징수한다.</p> <p>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u>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u>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 제 28조의 규정을</u> 준용한다.</p> <p>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p> <p>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u>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u>환부</u>할 수 있다.</p>	<p>3. <u>천재지변</u> ----- ----- -----</p> <p>⑤ ----- <u>단서에 따라</u> ----- ----- <u>해당</u>----- ----- <u>다음 달</u>-----.</p> <p>제4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p> <p>① ----- ----- <u>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 90조에 따라</u> -----.</p> <p>② ----- ----- <u>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u> ----- ----- <u>「지방세기본법」 제 91조를</u> -----.</p> <p>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p> <p>① <u>구청장은</u> ----- ----- <u>어느 하나에</u> ----- ----- ----- <u>환급</u>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u>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u> 아니하게 된 경우</p> <p>2. <u>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케된 부분의</u> 면적이 <u>굴착허가</u> 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u>소요되는</u>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u>최소굴착폭미만으로</u>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u>환부</u>대상에서 제외</p> <p>3. <u>기타</u> 구청장이 <u>특별한</u> 사유가 있다고 <u>인정할</u> 경우</p> <p>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u>자가</u> 당초에 <u>굴착허가</u> 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u>소요되는</u>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u>추징할 수 있다.</u></p> <p>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 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u>재시공명령 또는</u> 그 재시공에 <u>소요되는</u>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u>징수할 수 있다.</u></p> <p><u>제5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 -----<u>도로복구공사가 필요치</u> -----</p> <p>2. <u>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케부분의</u> -----<u>굴착허가</u> ----- ----- 드는 ----- ----- <u>최소 굴착폭 미만으로</u>----- -----<u>환급</u> -----</p> <p>3. <u>그 밖에</u> -----<u>부득이한</u>----- ----- <u>인정하는</u> -----</p> <p>② ----- <u>자의</u> <u>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u> ----- <u>드는</u> ----- ----- <u>추가 징수하여야 한다.</u></p> <p>③ ----- ----- -- <u>도로복구공사</u> 시행자에게 <u>재시공 명령을 하거나</u> -----<u>드는</u> ----- ----- <u>징수하여야 한다.</u></p> <p><u>제6조(시행규칙)</u> 현행과 같음</p>

현 행

〈 별 표 1 〉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케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컷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컷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l×l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포장도로 -손케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류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감독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분의 공사관리업무 요율		

개 정 안

〈 별 표 1 〉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케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케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컷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컷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 면적은 l×l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직접손케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포장도로 -손케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 콘크리트포장도로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 (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화강석류 -손케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케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감독업무비	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분의 공사관리업무 요율		

현 행

개 정 안

3. 굴착폭(B), 간접손래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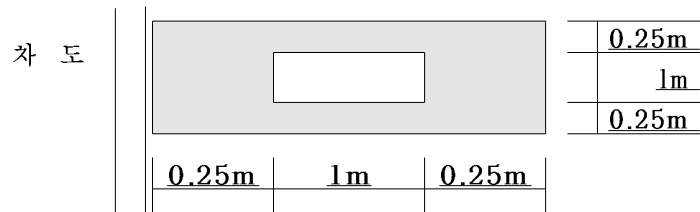
가. 굴착폭(B) 및 간접손래영향(b)

1) ~ 2) (생략)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생략)

4. (생략)

3. 굴착폭(B), 간접손래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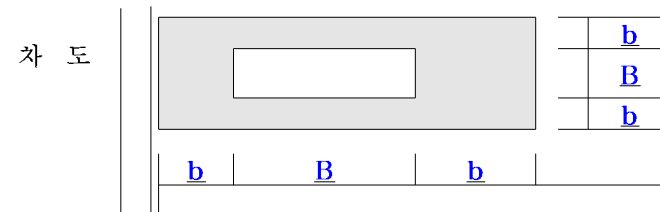
가. 굴착폭(B) 및 간접손래영향(b)

1) ~ 2) 현행과 같음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 행

〈별 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1	표층 : 5cm 기층 : 15cm 보조기층 : 20cm : 40cm	폭 20미터이상 도로	
	A - 2	표층 : 5cm 기층 : 7.5cm 보조기층 : 20cm : 30cm	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1	표층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도로	
	C - 2	표층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기 덧쌓기 포장도로	CA-1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 장인 경우
	CA-2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 블록	일반보도블럭 표층 : 6cm 래 : 4cm 보조기층 : 10cm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 블록	소형고압블럭 표층 : 7cm 래 : 4cm 보조기층 : 10cm		
	오나메트 타일	표층 : 4.5cm 탈(1:3) : 3cm 콘크리트 기초 : 5cm 보조기층 : 10cm		
	투수성 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래 : 10cm 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 도로		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 타 도로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생략〉

개 정 안

〈별 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종별	부호	적용단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1	표층 : 5cm 기층 : 15cm 보조기층 : 20cm : 40cm	폭 20미터이상 도로	
	A - 2	표층 : 5cm 기층 : 7.5cm 보조기층 : 20cm : 30cm	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1	표층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도로	
	C - 2	표층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기 덧쌓기 포장도로	CA-1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20cm 보조기층 : 20cm	폭 6m이상	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 장인 경우
	CA-2	표층(아스콘) : 5cm 기층(콘크리트) : 15cm 보조기층 : 15cm	폭 6m미만 도로	
보 도	일반보도 블록	일반보도블럭 표층 : 6cm 래 : 4cm 보조기층 : 10cm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 블록	소형고압블럭 표층 : 6cm 래 : 4cm 보조기층 : 10cm		
	화강석	표층 : 3~5cm 탈(1:3) : 4cm 콘크리트 기초 : 10cm 보조기층 : 10cm		
	투수성 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래 : 10cm 래 : 5cm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비포장 도로		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 도로		
기 타 도로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비고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별 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u></p> <p>1. 〈생략〉</p> <p>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u>카타기</u> 등을 사용하여 <u>포장층을 절단한 후</u>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u>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p> <p>5.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u>시설물관리 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u></p> <p>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및 <u>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영등포구)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u></p>	<p>〈별 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u>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u></p> <p>1. 〈현행과 같음〉</p> <p>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u>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 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진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u>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p> <p>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u>절단기</u> 등을 사용하여 <u>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u>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u>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4. <u>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u> <u>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괴발생시 굴착 원인이자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p> <p>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u>매설물 관리 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괴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u></p> <p>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p>